

문서번호 행정 2015-0801

수 신 인사혁신처장 (참고 : 인사혁신처 취업심사과장 전화 : 02-2100-6670)

발 신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담당 : 이은미 팀장 02-723-5302 emlee@pspd.org)

제 목 '퇴직 전 5년간 소속 부서 및 직위' 정보 비공개 취소 요구

날 짜 2015. 8. 6. (총 3 쪽)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관련 핵심정보인 '퇴직 전 5년간 소속 부서 및 직위' 정보 비공개를 취소하십시오

.....

1. 안녕하십니까?
2. 참여연대는 지난 7월 1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심사현황 정보 중 심사받은 퇴직 공직자의 <퇴직 전 5년 이내 소속 부서 및 직위>에 대한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공개청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관할하는 귀 처는 퇴직 전 5년 이내 소속부서 및 직위는 공직자윤리법 19조의3과 시행령 제35조의5(취업제한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결과의 공개항목)에 열거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7월 27일 비공개 처분했습니다.
3.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장유식 변호사)는 귀 처의 이같은 조치는 매우 부당한 것으로, 퇴직후 취업제한제도의 적정한 운영 여부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검증을 거부하겠다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공직자윤리법에 의거해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은 5년 이내에 소속한 부서의 업무와 연관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제한심사 결과가 적정했는지를 사회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퇴직 당시의 소속 부서와 직위뿐만 아니라 퇴직 전 5년 이내의 소속 부서와 직위가 당연히 공개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퇴직 당시의 부서와 직위만 공개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도의 운영이 적정한지 사회적 평가와 검증을 회피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참여연대가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평가하기 위해 2006부터 2014년까지 매년 정기적으로 동일한 정보를 공개청구해왔으며, 지금껏 정부에서는 이 정보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유독 이번에 이를 비공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의아할 뿐입니다.

4. 귀 처가 비공개 사유로 제시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5조의5는 작년 세월호 참사 이후 신설된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3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인터넷에 공개(공시)하도록 한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는 인터넷에 자발적으로 공시할 정보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지 정보공개청구제도에 따른 정보제공범위를 규정한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에서도 법률에서 공시제도를 두었다고 하여 그것이 공시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정보를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한다는 취지가 아니라고 판결(2011.7.28, 선고, 2011두4602)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령 제35조의5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5. 또한 귀 처 소속 정보공개 업무 담당 공무원은 비공개 결정의 근거에 대해 문의하는 참여연대 담당자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퇴직 전 5년 이내 소속부서 및 직위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이를 비공개 사유로 추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공직자의 퇴직 전 재직 부서와 직위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귀 처의 답변대로라면, 정부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작년까지 이같은 정보를 계속 공개해왔는데, 그렇다면 여태까지 정보공개법을 스스로 위반했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6.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35조의5는 세월호 참사 이후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난해 말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면서, 취업 심사 결과를 더 적극적으로 공개해 제도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설된 조항입니다. 그런데 귀 처가 시행령 35조의5를 근거로 정보공개를 제한하고 사회적 평가와 검증을 봉쇄하는 것은 공직자윤리법 개정 취지에 반하는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귀 처의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의 투명한 운영에 역행하는 조치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며, 비공개 조치를 취소하고 즉시 퇴직 후 취업 제한 심사를 한 이들의 ‘퇴직 전 5년 이내 소속 부서 및 직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끝.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균·법인·정강자·정현백